

【부 령】

- 미래창조과학부령제79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 환경부령제67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4호(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8
- 환경부고시제2016-162호(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8
- 환경부고시제2016-163호(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9
- 환경부고시제2016-164호(태백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결정)..... 10
- 환경부고시제2016-165호(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15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3호(사업인정) 16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2호(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16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3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16
- 관세청고시제2016-48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17
- 문화재청고시제2016-62호(문화재 등록) 19
- 문화재청고시제2016-63호(문화재보호구역 지정) 20
- 문화재청고시제2016-64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1
- 산림청고시제2016-72호(칠보산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26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4호(국적상실) 30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3호(국적취득)..... 32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국적상실)..... 3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7호(항로표지 현황변경) 34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0호(사설항로표지 신설) 34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0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34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1호(항로표지 현황변경) 34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7호(하천수사용 허가)..... 35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8호(하천수사용 허가)..... 35

(이면 계속)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9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3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0호(실시계획인가)	3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1호(하천수사용 허가).....	3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2호(하천수사용 허가).....	38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3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3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39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4호(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4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8호(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4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4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4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5호(전자금융업 등록).....	4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0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8호(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종결)	44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6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19호(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4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4호(신기술지정 신청)	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7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8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4호(공시송달)	49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계약해제를 위한 공시송달)	49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74호(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5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공시송달).....	5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8호(공시송달).....	5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공시송달).....	53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9호(유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54
○완도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54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6-8호(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54
---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78호(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55
○(서울)용산구공고제2016-580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74
○평택시공고제2016-1481호(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74
○순천시공고제2016-1045호(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공고 및 제안서 공모안내).....	75

- 존치부담금 → 시설부담금
- 도시계획세 < 삭 제 >
- 종합토지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농지보전부담금, 산림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044-201-3445 Fax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장현산업, ② 한라산업개발(주)
- 나. 전화번호 : ① 02-2141-7428, ② 02-2047-5228

2. 명칭 :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 콘크리트 복부 부재와 노들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거더 교량공법 (Nodular Girder)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프리텐션을 도입하여 사용성을 개선하고 경량화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들과 정착구가 있어 복잡한 거더 단부블록을 공장에서 프리캐스트로 제작하여 가설현장으로 운반하고 연결부재인 노들부재를 이용하여 단순 조립하므로서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을 할 수 있어 현장에서 거더의 제작 기간 단축과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된 PSC 박스거더와 교각 및 교대에 거더를 인양 및 거치한 후 거더 외측으로 연장된 노들부재가 브라켓 역할도 하므로 바닥판 캔틸레버까지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확장 배치 할 수 있어 바닥판에서도 동바리 및 거푸집작업이 최소화 함으로서 추락사고 예방과

공사기간 단축 및 작업인력을 최소화 하므로써 안전하면서도 급속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된 PSC 박스거더 교량공법

<범위>

프리텐션을 도입한 콘크리트 복부 부재들을 노들부재로 동바리 및 거푸집 없이 습식연결하여 현장작업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된 PSC 박스거더와 거더 외측으로 연장된 노들부재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캔틸레버부까지 확장 배치하여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므로써 급속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된 PSC 박스거더 교량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7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안 제56조제1항)

나.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안 제69조제3항)

다. 공익사업의 수요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73조제2항)

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 (안 제106조 신설)